

추 가 약 정 서

(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)

유니온저축은행 앞

20 년 월 일

채 무 자 : (인)
주 소 :

채무자는 유니온저축은행(이하 “저축은행”이라 합니다.)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(가계용)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1조 (목적) 이 약정서는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의료비, 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입니다.

제2조 (기 보유 주택) 채무자가 속한 세대^{주1)}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주1) “세대”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,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(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 및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) 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,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.

①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

종류	소유자	주소

② 보유 중인 주택 등

종류	소유자	주소

제3조 (주택 등의 추가 구입 금지의무 등)

-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 대출 실행일부터 전액 상환 전까지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주택 등 외에 추가로 주택 등을 구입^{주2)}하지 않습니다.

주2) 매매, 증여, 상속 등에 따른 소유권 취득. 다만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, 이하 같음

- ② 채무자는 본 대출 전액 상환 전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저축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제4조 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

1.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 실행일로부터 전액 상환 전까지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주택 등 외에 추가로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구입한 경우
2.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2조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보유^{주3)}하고 있는 경우

주3) 다만 대출신청일 이후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

제5조 (여신거래 약정위반)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, 제공일로부터 향후 3년간 금융기관^{주4)}의 주택 관련 대출^{주5)}이 제한됩니다.

주4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

주5) 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 <별표5>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

1.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 실행일로부터 전액 상환 전에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주택 등 외에 추가로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구입한 경우